지 방 자 치

⊙서울특별시고시제2002-373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3호(2000. 2. 9.) 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되고 동고시 제2000-215호(2001. 6.28.)로 구역변경지정된 용두구역중 제4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따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(☎ 3707-8139)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(☎ 2127-4581~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02년10월21일

서울특별시장

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

1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용두구역

2. 재개발 사업명칭 : 용두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사업

3. 재개발구역 면적변경결정조서

○구역명 : 용두구역

○위 치 :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

○사업시행면적

-기 정 : 90,111.5㎡

-변 경 : 8,9985.7㎡

○비 고 :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감소(125.8㎡)

가)재개발구역 제4지구 면적변경결정조서

○구역명 : 용두구역(제4지구)

○위 치 : 동대문구 용두동 46-1일대

○구 분 : 대지

○사업시행면적

-기 정 : 3,432.8㎡

-변 경 : 3,273.2㎡

-증 감 : 감159.6㎡

○비 고 :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감소

나)기타지구는 변동사항 없음

3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

가)도로결정내용 : 변경사항 없음.

나)공원결정내용 : 변경사항 없음.

다)공공공지결정(변경)내용

○구역명 : 용두구역(제4지구)

○위 치 : 동대문구 용두동 46-1일대

○구 분 : 공공용지

○사업시행면적

-기 정 : 994.3㎡

-변 경 : 1,028.1㎡

-증 감 : 증33.8㎡

○비 고 :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증가

※기타지구는 변경사항 없음.

4.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결정(변경)조서

가)재개발구역 제4지구 건축시설계획 변경결정조서

○획지의 구분 : 4지구

○위 치 : 용두 46-1 일대

구 분	획지면적	건폐율	용적률	연면적	층수(높이)
변경전	3,432.8㎡	40% 이하	720% 이하	41,890	18층이하 (72m)
변경후	3,273.2㎡	42% 이하	740% 이하	41,890 이하	18층이하 (70m이하)

○지하층수 : 7

○주된용도 : 상업

○용도구성 : 상업, 업무 ,근린

나)기타지구는 변동사항 없음.

5. 사업지구에 관한 계획결정(변경)조서

○구역명 : 용두구역

○시행지구명 : 4지구

○위 치 : 용두동 46-1 일대

구 분	시행면적 (㎡)	사업계획내역(㎡)			
		획지면적	공공시설면적		
			계	공공시설 부담면적	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
변경전	5,180.7	3,432.8	1,747.9	994.3	753.6
변경후	5,054.9	3,273.2	1,781.7	1,028.1	

※공공용지 부담율 : 15.89%

6. 기 타

용두구역 제1~8지구 공공용지(도로,공원) 확보위치 상호 대체지정에 따른 지구경계조정

가)획지면적 변경조서

지 번	지목	획지면적	비 고
46-1	대	660.9㎡	지적측량에 의한 면적확정임
46-4	〃	28.8㎡	〃
46-5	〃	311.9㎡	〃
46-6	〃	201.9㎡	공부상에 의한 면적확정임
46-7	〃	578.1㎡	지적측량에 의한 면적확정임
47-2	도	361.2㎡	〃
51-1	대	588.4㎡	〃
51-2	〃	542.0㎡	〃
계		3,273.2㎡	감 159.6㎡

나)공공시설부담면적변경조서

지 번	지목	공공시설부담면적	비 고
46-1	대	51.9㎡	지적측량에 의한 면적확정임
46-4	〃	29.1㎡	〃
46-5	〃	21.2㎡	〃
46-7	〃	75.4㎡	〃
51-1	〃	43.5㎡	〃
51-2	〃	20.4㎡	〃
52-35	〃	27.1㎡	〃
52-38	〃	26.6㎡	〃
52-41	〃	41.0㎡	〃
52-42	〃	138.8㎡	〃
52-43	〃	52.0㎡	〃
52-44	〃	62.2㎡	〃
52-45	도	41.7㎡	〃
52-46	대	81.6㎡	공부상 면적에 의한 확정임
52-47	〃	71.4㎡	〃
52-48	〃	21.9㎡	지적측량에 의한 면적확정임
52-49	〃	59.0㎡	〃
52-50	〃	30.5㎡	〃
52-51	〃	132.8㎡	공부상 면적에 의한 확정임
계		1,028.1㎡	증33.8㎡

⊙서울특별시고시제2002-374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72호(2001. 5.28.)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결정되고, 같은고시 제2002-107호(2002. 4. 3.)로 변경지정된 성북구 삼선동2가 412번지 일대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02년10월21일

서울특별시장

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삼선제1주택재개발사업

나. 재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
○구역명 :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

○위 치 : 성북구 삼선동2가 412번지일대

○면 적

-변경전 : 59,504.0㎡

-변경후 : 59,707.5㎡

-증 감 : 증203.5㎡

다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명칭	변경전 면적(㎡)	변경전 비율(%)	변경후 면적(㎡)	변경후 비율(%)	증감	비고
도시계획	계	59,504.0	100.00	59,707.5	100.00	증 203.50	
용도지역	일반주거지역	59,504.0	100.00	59,707.5	100.00	증 203.50	
택지	소계	48,019.0	80.70	48,080.3	80.53	증 61.30	
	택지 1	39,677.0	66.68	39,439.5	66.05	감 237.50	조합원 및 분양아파트
	택지 2	6,601.0	11.09	6,864.5	11.50	증 263.50	임대아파트
	택지 3	932.0	1.57	1,014.6	1.70	증 82.60	생활편익시설
	택지 4	809.0	1.36	761.7	1.28	감 47.30	종교부지